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9건)

거 창 군

--- 목 차 ---

연번	의안명	담당부서	쪽수
1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 담당관	1
2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9
3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기업과	13
4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25
5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6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37
7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전총괄과	45
8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림과	53
9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61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1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의무화하며, 부정용역 수행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용역 결과물의 품질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심의위원회 기능·구성·임기·해촉·제척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제5조~제10조)

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리 신설함(안 제14조의2)

다. 법령 인용조문 및 재기재사항 등 정비함(안 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2.~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를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운영을 도모”를 “운영에 기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용역”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타당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적합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불량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5조제3항 중 예산·기업지원·재무·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를 “전임 위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촉(解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피신청”을 “기피(忌避)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한다.

제9조제3항 중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리) ①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결과가 불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등을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거나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중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4.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불량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기업지원·재무·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현행	개정안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신 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현행	개정안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신 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리) ①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결과가 불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등을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거나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용역결과 공개)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용역결과 공개)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청년기본법」 제20조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1,400백만원 확보(지방소멸대응기금)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3.~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전세임대주택

⑤ 군수는 제3항제2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전세임대주택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제3항제2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전세임대주택 지원

나. 관련 조문: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계정)	16,000	1,400	2,600	3,000	4,000	5,000
군비	125		125			
세대수	100	9	16	18	25	32

리모델링비는 내년 시행 후 추가확보 등 결정계획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방소멸대응기금

가.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x 100세대 이상 = 15,800백만원

나.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등 사업 운영비: 200백만원

2. 군비: 리모델링비 125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추계: 9세대 이상

가. 전세보증금 1,380백만원

나. 중개수수료 등 20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미래첨단산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정비하여 우수 기업의 관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도비 지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정비 및 신설(안 제14조·제14조의2·제15조)

1)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정비

2) 신설·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다.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1)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 지원

2)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라. 산업단지 업종 변경 지원사업 신설(안 25조의 3)

마. 이중지원 금지 보완(안 제38조)

1) 현행: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개정: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중복지원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 3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26.~9.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6.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7.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설보조금”을 “설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설·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이 경상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군수는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래첨단산업·비영리법인의 지원특례) ① 군수가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3(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업종 변경 지원) 군수는 원활한 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려는 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에 따른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물을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3)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 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물을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3)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 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 설>	**6.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신 설>	**7.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생략)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관내 신설·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설·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경상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	제14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이 경상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경상남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이내 2. 융자금: 최대 50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군수는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관내에서만 이전일 경우	<삭 제>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과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삭 제>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군의회 동의를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군의회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관내기업 지원) ㉮ 관내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미래첨단산업·비영리법인의 지원특례) ① 군수가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3(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업종 변경 지원) 군수는 원활한 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려는 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에 따른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업종 변경 지원사업 신설

나. 관련조문: 안 제25조의3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계	-	30	30	30	30	120
도비	-	-	-	-	-	-
군비	-	30	30	30	30	120

3. 관련 의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산업 진출, 사업 다각화 및 생산품목 변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용역비 일부 지원

: 연간 30백만원(군비 100%)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 인 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4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노인복지사업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1)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2,652,738천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을 “위원을 해촉(解囑)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과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안 제5조), 자활계정의 용도(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입	기금	61	61	61	61	61	305
세출		42	42	42	42	42	21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세입: 노인복지기금 26백만원, 자활기금 35백만원

2. 세출: 42백만원

가. 노인복지 사업 지원 3건, 26백만원

1) 사회 봉사활동비 지원: 10백만원

2) 경로당 긴급 보수 지원: 10백만원

3) 사회봉사활동 평가 우수분회 활동비 지원: 6백만원

나. 자활지원 사업 지원 3건, 16백만원

1) 자립역량 교육지원: 4백만원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환경개선: 5백만원

3) 경남자활 가족한마당 행사지원: 7백만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2025. 12. 9.) 내용과 지역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정비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같이 규율하고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 사업에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신설함(안 제5조)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통합지원협의체 정비함(안 제8조)

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정비함(안 제7조·제10조·제12조)

1)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전담조직: 법 시행규칙 제9조·제21조

2) 사무의 위탁: 법 시행령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867백만원 확보(국도군비 매칭)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2.~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인별지원계

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보건소 및 읍·면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제10조,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의 업무

③ 그 밖에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제5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현행	개정안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현행	개정안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업무 담당자 가.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보건소 및 읍·면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운영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조(전담조직 및 전담창구) ① 군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현행	개정안
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과 세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의 업무 ③ 그 밖에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통합돌봄사업 추진

나. 관련 조문

1) 통합지원 사업 등(안 제5조)

2)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3) 통합지원협의체(안 제8조)

4)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합계	867	1,181	1,300	1,420	1,540	6,308
국비	434	591	650	710	770	3,155
도비	114	150	165	180	195	804
군비	320	441	485	530	575	2,351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26년 기준

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2026. 3. 27. 법 시행): 760백만원

나. 통합돌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07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6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맞벌이가정 등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급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기준 명확화 및 범위 확대함(안 제2조)

1) 결식우려 기준 구체화

2) 급식지원 대상자 확대

가) 차상위계층 아동

나) 방학 중 맞벌이가구 등의 아동

다) 급식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학교 재학생 및 외국 국적 아동

나.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 현행화(안 제6조)

다.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16조)

1) 조례로 위임한 법조문 등으로 인용조문 정비

2) 「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에 해당하는 시행규칙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 50,5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5.~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1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을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우려(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본문)제1호 중 “아동”을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방학 중 맞벌이가구 등의 아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1.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외국 국적 아동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를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촉(解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우려(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4.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	4.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
5. 보호자가 사고·질병이 나는 등 보호자로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가 사고·질병이 나는 등 보호자로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신 설>	8. 방학 중 맞벌이가구 등의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

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1.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2. 외국 국적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③ (생 략)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당연직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방학 중 맞벌이 등 돌봄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나. 관련조문: 급식지원 대상자(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기간: 2027년~2031년

2) 비용: 연 50,500천원

3) 대상: 방학 중 맞벌이 등 돌봄 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합계
군비	50,500	50,500	50,500	50,500	50,500	252,500

Ⅱ. 2027년 비용 추계

1. 총예산: 50,500천원

2. 여름·겨울방학 도시락

가. 지원: 7천원(1식)×100명×50일 = 35,000천원

나. 자부담: 1천원(1식) 별도

3. 자원봉사자 수당: 15천원×50일×20명 = 15,000천원

4. 자원봉사자 간담회: 회의 물품, 식대 등 = 500천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7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민방위·재난·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 및 명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편성기준, 지원신청 및 관리, 편성제외를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 조직, 대장 및 대원의 임무를 정함(안 제6조~제9조)

라. 동원, 복무 지도·감독, 정치활동 등의 금지, 교육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마. 복제, 재정지원, 사기진작 등을 정함(안 제14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10,5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0.~9.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3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민방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안보·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지역단위기동대(이하 “단위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위기동대의 명칭은 ○○읍·면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3조(편성기준) 기동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는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중 기동대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있는 사람
2.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3. 민방위·재난·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기동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대원이 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대원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5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기동대 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위기동대장은 기동대의 대원이 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③ 기동대는 단위기동대 간 정보교류, 협력 및 공동활동을 총괄·조정할 수 있다.
④ 기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단위기동대 조직) ① 단위기동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③ 단위기동대 정원은 15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과 활동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장의 임무 등) ① 대장·부대장·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② 대장은 기동대 또는 단위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회계, 회의기록 및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임무) 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기동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동원) 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복무 지도·감독)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2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2.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성별·연령·장애·가구형태 등 주민의 특성에 따른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등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복제 등) 대원의 복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 군수는 대원에게 민방위복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원이 별표 1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 등) ① 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견학, 간담회, 기술경연 등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원이 민방위·재난·안전활동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로 본다.

[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임무(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 임무
평시	1.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활동 참여 2. 민방위시설·장비 및 비상대비 물자 점검 지원 3.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4. 생활안전 및 재난예방 홍보활동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지원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민방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민방위사태·재난 발생시	1. 주민 대피 및 질서유지 지원 2. 재난·재해 현장 대응 및 초기 복구 지원 3. 피해지역 복구 및 구호 활동 지원 4.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 5. 민방위·비상대비 관련 기관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 및 재난·안전활동

[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반명	분장 업무
지휘반	1. 기동대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 2. 대원의 연락·소집 및 활동관리 3. 대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4. 기동대의 규율 및 질서유지 5. 단위기동대 간 업무조정 및 협력 6. 기동대 활동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활동반	1.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지원 2.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질서유지 지원 3.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4.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 및 응급 지원 5. 민방위시설·장비 및 비상대비 물자 점검 지원 6.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생활안전반	1. 주민 생활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 2. 안전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안전활동 지원 3. 안전캠페인 및 생활안전 홍보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생활안전교육 지원 5. 화재·폭염·한파·풍수해 등 생활 주변 재난예방 활동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복장·장비 지원, 기동대 활동 보상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나. 관련조문: 복제 등(안 제14조), 재정지원 등(안 제15조), 사기진작 등(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연평균 소요 비용 5천만원 미만

나. 정확한 재정 지출의 기술적 추계 어려움

다. 2027년 예산 추계

1) 여성민방위기동대: 11개 읍면 137명 활동

2) 활동보상금: 137명 * 4회 * 20,000원 = 10,960천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석재산업 현장의 의견과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거창군 석재산업 발전협의체를 신설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 발전협의체 설치·기능을 정함(안 제8조)

나. 협의체 구성, 위원 임기를 정함(안 제9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제12조)

라. 회의, 의견청취,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4,8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1.~10.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1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석재산업 발전협의체) ① 군수는 석재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석재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발전의 방향
2. 석재산업 현장의 의견 및 정책수요 수렴
3. 석재산업 지원사업 및 연구과제의 발굴 등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산림과장,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석재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나. 석재산업 관련 연구원이나 전문가
 다. 그 밖에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

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석재산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석재산업 발전협의체)** ① 군수는 석재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석재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발전의 방향 2. 석재산업 현장의 의견 및 정책수요 수렴 3. 석재산업 지원사업 및 연구과제의 발굴 등
<신 설>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산림과장,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석재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나. 석재산업 관련 연구원이나 전문가 다. 그 밖에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현행	개정안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현행	개정안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석재산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 설>	제14조(의견청취)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석재산업 발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나. 관련조문: 회의 등(안 제13조), 의견청취(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나. 2027년 예산 4,800천원 확보 예정

 1) 석재산업 발전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가) 위원 10명 * 3회 * 100천원 = 3,000천원

 (나) 전문가 6명 * 3회 * 100천원 = 1,8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최채환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129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효과를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

1) 지원금 확대: 10만원 ⟹ 예산 범위에서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간결 명확하게 정비(삭제 안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 군비 48,625천원 확보예정(국비 3,750천원, 도비 2,625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12.~9.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교통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일 것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失效)시킨 사람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가 실효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일 것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失效)시킨 사람일 것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나. 관련 조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기간: 2027년 1분기~2031년 4분기

2) 비용: 연 55,000천원

3) 대상: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2026. 3월 기준 10,269명) 중 자진반납자

4) 국도비 매칭: 국비 3,750천원, 도비 2,625천원으로 가정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합계
총 비용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국비	3,750	3,750	3,750	3,750	3,750	18,750
도비	2,625	2,625	2,625	2,625	2,625	13,125
군비	48,625	48,625	48,625	48,625	48,625	243,125

Ⅱ. 2027년 비용 추계

1. 총예산: 55,000천원

2. 군비: 48,625천원

3. 내역

가. 일반반납자 50명 × 500천원 = 25,000천원

나. 실운전증명 50명 × 600천원 = 30,000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김성국